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8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이춘석 · 박민규 · 문진석
문정복 · 윤종균 · 윤준병
양문석 · 임미애 · 이정문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

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
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채용광고를 게시한 후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으로,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을 “및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공고를 하고 해당 내용을 채용절차별 대상 구직자에게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인자는 채용 광고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실대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급주기, 성과급·인센티브·수수료 등 변동급의 지급시기·지급조건 등의 기본적인 범위 및 기준 등

2. 정규직, 기간제 등 구체적인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고용형식 등
3. 수습근무·시용(試用) 등 평가 기간의 유무·기간·처우
4. 담당할 직무의 주요 내용 및 범위
5. 근무 장소(사업장 소재지)
6. 전형 일정(서류접수일, 면접일, 최종합격 통지 예정일)과 채용 인원의 최소·최대 범위
7.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가능성과 그 조건

⑥ 구인자는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광고 종료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구직자가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채용대행자 등 구인자의 위탁을 받아 채용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⑧ 위탁사업자는 거짓 또는 누락된 광고에 대한 신고·삭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삭제 절차, 정정 요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

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한 구인자
4. 제4조제8항에 따른 신고·삭제·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정정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탁사업자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구인자(제4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위탁사업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구인자는 <u>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u> <단서 신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채용광고를 게시한 후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을</u> <u>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u> <u>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공고를 하고 해당 내용을 채용절차별 대상 구직자에게 전자우편·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③ 구인자는 <u>구직자를 채용한 후에</u> <u>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u> <u>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 <u>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u> <u>및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u> ----- -----.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u>구인자는 채용 광고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실대로 명시</u>

<신 설>

하여야 한다.

1. 임금의 총액, 임금의 구성항
목 및 지급주기, 성과급·인
센티브·수수료 등 변동급의
지급시기·지급조건 등의 기
본적인 범위 및 기준 등

2. 정규직, 기간제 등 구체적인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고용
형식 등

3. 수습근무·시용(試用) 등 평
가 기간의 유무·기간·처우

4. 담당할 직무의 주요 내용 및
범위

5. 근무 장소(사업장 소재지)

6. 전형 일정(서류접수일, 면접
일, 최종합격 통지 예정일)과
채용 인원의 최소·최대 범위

7.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
로의 가능성과 그 조건

⑥ 구인자는 제5항 각 호에 관
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문
서 또는 전자기록을 광고 종료
일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
다. 보관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구

<신 설>

<신 설>

제1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 략)

<신 설>

직자가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채용대행자 등 구인자의 위탁을 받아 채용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⑧ 위탁사업자는 거짓 또는 누락된 광고에 대한 신고·삭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정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삭제 절차, 정정 요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시한 구인자

<u><신 설></u> 3.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3. (생 략) ④ (생 략)	4. 제4조제8항에 따른 신고· 삭제· 정정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정정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탁사업자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 ----- ---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구인자 (제4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위탁사업자를 포함한다)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